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1. 18 선고 2022가단711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1. 23.

판 결 선 고 2023. 1. 18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2021.

7. 13.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
등기과 2021. 7. 22. 접수 제30325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1. 3. 11. D에게 25,000,000원을 이율 12.4%, 지연이율 15.4%,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.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. 9. 2. 'D은 원고에게 24,408,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(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차전2337)이 내려졌고,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D은 2021. 7. 13.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5 지분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12,474,410원에 매도하면서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 대금 전액을 계약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, 2021. 7. 22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,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외에 E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43,778,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9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

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앞서 본 것처럼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당시 D로서는 그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,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다. 피고의 선의 여부

1) 피고의 항변

피고는 자신의 형인 D이 전기공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.

2) 판단
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 또한,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,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이해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F가 2021. 3. 5. D에게 10,000,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10,000,000원이 D에게 지급되었고, 나머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,474,410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그 매매계약 체결과정 및 이후 경과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점, 피고는 D와 형제관계로서 피고가 밝히는 매수 경위에 의하더라도 D의 재산상태를 의심하거나 다른 일반채권자의 존재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피고에 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종륜

별지